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14
------------	------

발의연월일 : 2017. 3. 6.

발의자 : 윤후덕 · 노웅래 · 황주홍

김병욱 · 김정우 · 홍철호

박정 · 이정미 · 임종성

소병훈 · 김영춘 · 심재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우선구역은 학교, 쇼핑센터 등 보행량이 높은 구역에 차보다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우선하도록 차량 속도저감시설, 횡단 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중심의 생활환경을 조성한 구역임.

이와 같은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보다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계획 수립 시 주민, 시민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4항, 제18조제5항 신설, 제18조제6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를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관계 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의견청취 절차 등”을 “의견청취 절차,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한다.

⑤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제4항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u>정협의체의 구성·운영 등</u> ----- -----.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u>⑥</u> (생략)	